



제418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강화〉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1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2. 제 출 일 : 2024. 7. 5.
3.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7조 및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및 “공판기록” 등에 대한 피해자등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09호, 이하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이라 한다) 제8조의3¹⁾ 및 제8조의4²⁾를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이를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 1) 안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안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법원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제27조제2항·제6항,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 ----- ----- ----- ----- 제22조,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②·③ (생략)	· 제6항-----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³⁾에 따르면 피해자등은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
- 또한, 현행법 제27조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등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규정된 열람·등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실무상 재판장의 허용 범위 또한 비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⁴⁾, 특히 최근 부산 돌려차기

3)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김광현,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6. 27.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이슈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무부는 일부 범죄⁵⁾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원칙적 허가를 명시하는 특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성폭력범죄에 피해자에 대한 열람·등사권 강화를 통해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⁶⁾.

□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에 대해서만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검사에게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검사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에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에 대한 재량 규정에 따라 법원이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에 대한 재량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

5) 특정강력범죄(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범죄, 스토킹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

6)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2024. 2. 27.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함.

-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 등에 대한 열람·신청 근거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원칙적 허가 및 불허 결정에 대한 피해자등의 불복절차 등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게 됨.

□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한 원칙적 허가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현행 “범죄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개선여부, 그 방식 및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9호),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및 “공판기록” 등에 대한 피해자등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15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원칙적 허가를 명시하는 내용의 6개 법률안⁷⁾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7)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19호)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21호)

③ 「장애인복지법」(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23호)

④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27호)

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계류 중인바,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

2201422호)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01418호)